

#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22호)

- '99. 12. 20.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1. 19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9. 11. 25
- 다. 상정일자 : '99. 12. 20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94회 정기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회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 가. 제안이유

- '98.10. 2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환)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 나. 검토결과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 발생시 이해 당사자간 원만히 처리되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음.

- 향후 부동산중개업체가 국제화 및 대형화될 가능성이 농후 하므로 본 조례는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직제개편으로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서초구에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답>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98년 10월 2일 조례제정 당시 서울시 준칙에 의하여 현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위촉하고 있음.

질> 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이후 운영실적은?

답> 본 조례가 제정된 '98년 10월 2일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

##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일자 : '99. 11. 19.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 1. 제안이유

'98. 10. 2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 (안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동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